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1. 12 선고 2019가합1158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피고1. 주식회사 A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안

담당변호사 송재순, 이명상, 이종호, 정혁

3. C

변론 종결2020. 10. 15.

판결 선고2020. 11. 1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과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1,600,088원 및 그중 1,242,052,7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6.부터, 87,140,368원에 대하여는 2019. 6. 25.부터, 각 피고 주식회사 A은 2019. 11. 7.까지, 각 피고 B는 2019. 9. 30.까지 각 연 1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8. 6.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등기와 2018. 6. 14. 접수 제292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함)은 피고 A이 주식회사 D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보증1	2010. 5. 28.	E	주식회사 D	2011. 5. 27.	85,000,000원
보증2	2016. 6. 17.	F	중소기업은행	2017. 6. 16.	1,105,000,000원
보증3	2016. 6. 17.	G	중소기업은행	2017. 6. 16.	190,000,000원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위 보증1과 관련하여 보증기한이 2019. 5. 17.로, 위 보증2와 관련하여 보증기한이 2019. 6. 14.로, 위 보증3과 관련하여 보증금액이 152,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이 2019. 6. 14.로 각각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구상금채무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추가보증료,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6. 2. 이후 손해금율을 연 10%로 정하고 있다.

4) 원고는 2019. 6. 25. 위 보증1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에 87,140,368원을, 2019. 4. 26. 위 보증2 및 보증3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에 1,243,985,85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4. 26. 피고 A으로부터 위 보증2 및 보증3과 관련하여 1,933,150원을 회수하였다.

5) 위 보증1과 관련하여 2019. 5. 18.부터 2019. 6. 24.까지의 보증으로 인한 추가보증료 150,430원이 발생하였다.

6)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면서 그 비용으로 2,311,67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 A으로부터 그 중 55,608원을 회수하였다.

7) 피고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A과 피고 B는 연대하여 1,331,600,088원(= 보증1 대위변제금 87,140,368원 + 보증2 및 보증3 대위변제금 1,243,985,850원 + 추가보증료 150,430원 + 법적절차비용 2,311,670원 + 위 보증2 및 보증3 관련 회수금 1,933,150원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2019. 4. 26. 1일분 이자 528원 - 위 보증2 및 보증3과 관련 회수금 1,933,150원 - 법적절차비용 관련 회수금 55,608원} 및 그중 위 보증2 및 보증3 관련 미회수된 대위변제금 1,242,052,700원(= 1,243,985,850원 - 1,933,15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 2019. 4. 26.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소장 부분 송달일 2019. 11. 7.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장 부분 송달일 2019. 9. 30.까지 각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위 보증1 관련 대위변제금 87,140,368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 2019. 6. 25.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소장 부분 송달일 2019. 11. 7.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장 부분 송달일 2019. 9. 30.까지 각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정엽

판사김동욱

판사김은솔

별지